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강북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- 그럼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
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
사용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
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거나 수익계약으로 수
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들이 주최하는 경기·행사
및 시 단위 공식 대회 등의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

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
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
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